I. 수정보고서 재검토 평가요약문

(검단양촌IC~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평가)

구 분				주	요 내용				
사 업 개 요	1. 과업명 : 검단양촌(0 타당성 평) 2. 사업지 우 : 서구 오류: 서구 오류 3. 총 투자비 4. 사업시행 5. 주요내용	가 치 왕길동(대를 왕길동(완경 : 483억원 자: 인천공	글2-115호선 정로) 일 방역시)~	200	ANGELIA PERME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TAN	12/18/19/28/24/28 20/19/19/29/24/28 20/19/29/29/29/29/29/29/29/29/29/29/29/29/29	1 日本 1 日本	대 요합증정 방이지고개 사월
지역현황	 과업노선 시점부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에 대로2-115호선과 대로3-59호선이 설계완료되었고 중간부와 종점부에 중봉대로와 봉수대로, 완정로가 간선망을 형성하고 있음. ○ 주변개발계획으로는 왕길도시개발, 오류지구, 검단도시개발사업 등이 있음 								
대안설정	○ 대안1(검단양촌IC 직접 접속안, 도시관리계획 변경), 대안2(도시관리계획 준용)								
	○ 사업시행시 교통수요 예측결과								
	연장(km) 2		24년	2028년	2033է	크 20)38년	2043년	
	2.1		,477	27,734	27,89	8 2	8,027	28,034	
	주 : 거리가중평균교통량 기준이며, 대안1과 2는 교통량 동일(시종점 동일, 연장차이0.02km) ○ 사업비 세부내역 (억원, VAT제외)								
 대 안 별	총 사업비		_{극권} , VAIA 		/ 부대비			예비비	
타 당 성	463.7		157.6		23.6			7.9	
명가결과 -									
	S. II.O.E.		비용(억원)		편익(억원)		제성 분석	 ·석결과	
	구분 	비용	할인비용	총 편익	할인편익	B/C#	NPV(억원	!) IRR(%)	
	대안1	360.8	415.8	1,007.3	449.8	1.08	34.0	5.03	
	주 : 할인율 4.5%적용					•			
결 론	○ 본 사업원 교통소통		칟C~검단신.	도시간 도로	르개설로 수.	도권 제2순	환고속도로	의 접근성 개	선과

Ⅱ. 수정보고서 재검토 세부내역

(검단양촌IC~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평가)

구	분	세부검토의견	조치 결과	비고
개	ũ	○사업의 추진경위는 타당성 평가용역 계약 이후의 추진계획이 아닌, 본 사업의 최초 계획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를 서술하기 바람 (타당성 평가 이전에 예산 확보를 위한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, 이전 과업과의 비교 분석결과를 수록하기 바람)	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상위계획인 인천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(2018. 6)에 단기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임	반영 p1-7
		○ 사회경제지표 분석 연도를 일치시키기 바람 (본 타당성 평가의 기준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사회경제지표 분석을 수행하기 바람)	분석하였으며, 2018년 데이터가 미	반영 p2-1~ p2-5
기초 분	자료 석	○ 관련계획 검토에서 본 노선의 시점부인 대로2-115호선 및 3-59호선 본 사업 노선과 연결되는 도로에 대하여 노선 개요, 사업시행자, 진행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기 바람	도로노선은 2009년 10월 사업을 시작 2019년 05월 공사 착공 및	반영 p2-84~ p2-85

구 분	세부검토의견	조치 결과	비고
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	○ 과업 노선의 종점부는 금곡동 동남자연 아파트 입구로서 현지 3지 교차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, 종점부 교차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	대로에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종점부 교차로의 원활한	반영 p3-20~ p3-24
	○설계기준 검토의 횡단폭원 구성에서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기준이 1.0m이나, 0.5m를 적용한 사유를 기재하기 바람 (시종점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폭원을 검토하고, 시종점부와의 일치성 검토 결과를 수록하기 바람)	○설계기준상의 중앙분리대 최소폭은 도시지역인 경우 시설물 설치시 1.0m이나 방향별 분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는 0.5m 적용 가능함을 표기함 ○시종점부의 도시계획도로(대로2- 115호선, 대로3-59호선, 봉수대로, 완정로)는 모두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고 0.5m 적용	반영 p3-12
	○ 또한, 설계기준 검토에서는 우측 길어깨 폭원을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0.5m를 적용한다고 기술하였는데, 횡단면도 상에서는 0.75m를 적용하였는바, 설계 기준 검토와 최종 횡단 구성과 일치 시키기 바람	(0.25m~0.5m)와 배수를 위한 측구 0.5m를 적용하여 최소폭 0.75m를 적용함이 타당함으로 설계기준의	반영 p3-13

Ⅲ. 수정보고서 재검토 종합의견

(검단양촌IC~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평가)

- 수정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보완하였음
- 사업 추진 경위를 서술하였음
- 사회경제지표 분석 연도를 일치시켰으며, 시점부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였음
- 과업 노선의 종점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수록하였음
- 시종점부의 도로의 횡단폭원 검토 결과를 추가하였음
- 그 외 사항에 대하여도 보완 내용이 수록되었음

○ 금차 보완이 충실히 이행되어 추가적인 의견은 없음